

2015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

I. 회부개요

1. 의안번호 : 제1180호, 제1181호
2.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3. 제출일자 : 2016. 5. 10.
4. 회부일자 : 2016. 5. 16.

II. 검토의견

1.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

가. 세입결산 총괄

1) 2015회계연도 세입결산 개요

- 2015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현액은 1조 101억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조 719억원으로 결정되어, 이 가운데 실제수납액은 1조 624억원이며, 미수납액은 95억원으로, 징수

율은 99.1%로 나타남.

<표 1-1. 2015회계연도 세입 결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예 산 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미수납액 (B-C)	징수율 C/B (%)
2015년	1,010,185	1,071,945	1,062,412	9,533	99.11
2014년	951,689	962,039	943,904	18,135	98.11
2013년	829,852	845,634	844,204	1,430	101.73
2012년	438,307	427,856	427,132	724	99.83
2011년	264,334	256,133	255,181	952	99.63

- 2015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의 주요 세입원은 ‘보조금’으로 전체 세입의 63.0%(6,366억원)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는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전체 세입의 36.4%(3,674억원)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표 1-2. 2015회계연도 주요 세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금 액	구성비 (%)	금 액	구성비 (%)	금 액	구성비 (%)	금 액	구성비 (%)	금 액	구성비 (%)
합 계	1,010,185	100.00	951,689	100.00	829,852	100.00	438,307	100.00	264,334	100.00
세외수입	6,065	0.60	7,272	0.76	26,680	3.21	17,939	4.09	10,687	4.04
보조금	636,670	63.03	642,127	67.48	518,261	62.45	327,113	74.63	248,320	93.94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367,450	36.37	302,291	31.76	252,018	30.36	80,234	18.30	5,328	2.01
지방교부세	-	-	-	-	32,894	3.96	13,022	2.97	-	-

2) 최근 5년간 세입결산 추이 및 특징

- 최근 5개년 동안의 세입예산액 결산 추이(표 1-1)를 살펴보면, 2012년 이후부터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좀 더 구체적으로는, 2015회계연도의 세입 예산현액(1조 101억원)은 2011회계연도의 예산액(264억원)과 비교해볼 때 7,458억원이 증가하여, 동 기간동안 3.8배 가량 증가함.
- 특히,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 동안은 전년대비 각각 1.7배, 1.9배, 1.2배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처럼 2012년부터 세입예산액이 급속도로 증가한 이유는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국가보조금의 증가와 누리과정에 대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이 증가한데 따른 것임.
- 한편, 최근 5개년 동안의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세입원천 추이(표 1-2)를 살펴보면,
- 주요 세입원의 하나인 ‘국고보조금’의 경우, 2011년 이후 2014년까지 각각 2,483억원, 3,271억원, 5,182억원, 6,421억원으로 매년 그 절대 규모가 꾸준히 증가해 오다가 2015년 6,366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간 줄어들어든 것으로 나타남. 국고보조금의 규모는 2011회계연도와 비교해볼 때 2.6배가량 증가한 것임.

나. 세부항목별 검토의견

1) 미수납액 저감 대책 필요

- 2015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징수율(표 1-1참조)은 99.1%로 대체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다만, 징수율이 높은 만큼 미수납 비율은 0.89%로 1%에도 채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겠으나, 미수납액의 그 절대액으로 볼 때 95억원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그 규모가 적지 않다 할 것임.
- 특히, 미수납액의 규모가 급격하게 커지는 시기는 2014년 이후 부터인데, 2011년 이후 2013년까지 평균 10억원('11~13년 3개년 평균)에 이르던 미수납액이 2014년에 181억원으로 상승하였고, 이어서 2015년에도 95억원에 이르고 있는바, 미수납액의 지속적 증가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 '시·도비반환금수입'에 대한 적극적 징수대책 필요

- '임시적세외수입' 가운데 '시·도비반환금수입' 항목의 경우, 징수 결정액은 562억 2,723만원으로 결정되었으나, 이후 실제수납액은 472억 4,116만원에 그치면서, 나머지 92억 8,617만원은 미수납 처리됨. 이에 징수율은 75.1%에 그쳤고, 미수납액 전액은 다음연도로 이월됨.

<표 1-3. 시·도반환금 수입 세입 조서> (단위: 천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다음연도 이월액	징수율(%)
4,708,894	-	4,708,894	56,527,236	47,241,061	9,286,176	9,286,176	75.1

- 이와 관련하여, 상기의 시·도비반환금의 대부분은 무상보육 정책에 따른 보육료 등의 시비보조금에서 발생한 것인데, 특히 '15회계연도의 반납금은' 13년에 전면 무상보육으로의 전환으로 인한 관련 예산의 증가에 따른 부수적 효과라는 점을 일정 정도 감안해 볼 수 있겠으나,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회계연도 징수율은 75.1%에 그치고 있고,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세입결산의 미수납 총액(95억 3,332만원) 가운데 97.4%(92억 8,617만원)가 바로 여기 '시·도반환금수입'에서 발생하고 있는바, 자치구 회수 반환금에 대한 보다 철저한 반환 요구를 통한 적극적 징수 노력 및 징수 대책이 요구됨.

3) 소극적 세입 추계 문제 개선 등 과학적 추계 철저 필요

- 세입추계와 관련하여, 예산액은 예산 계획상 예산추계를 통한 산정액이고, 징수결정액은 실제 징수결정된 금액을 말함. 그러므로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상 격차가 최소가 될 경우 예산액상의 추계가 보다 더 면밀한 것이라 할 것이며, 세입의 정확한 추

계는 결국 유용가능한 세출의 확보로 이어지므로, 보다 과학적이고 정확한 예산세입 추계는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할 것임.

- 이점을 고려해볼 때, 2015회계연도 세입예산의 예산액과 징수결장액간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는 항목들이 다소 발견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의 개선이 요구됨.
- 그 대표적인 사례가 ‘시도비반환금수입’ 항목으로, 예산현액은 47억 889만원이지만, 징수결정액은 565억 2,723만원으로, 이들 간의 차액은 무려 518억 1,834만원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고, 격차율은 1,100%에 이르고 있음(표 1-3 참조), 이는 해당 예산액에 대하여 너무 소극적인으로 추계한 결과로 나타난 것 이라 할 것임.
- 앞서 언급하였듯이, ‘시도비반환금수입’ 은 무상보육 관련 예산의 반환금 및 미수납금의 증가와 밀접히 관련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14회계연도 결산심사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 서는 ‘전면 무상보육이 실시된 2013년도에 대한 반환금이 2015회계연도에 본격적으로 반납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세입추계 철저 및 반환금 회수를 위한 철저한 예산운용 방안의 강구가 필요함’을 지적한바 있음.
- 그런데도 이처럼 해당과목에 대한 세입추계상의 오류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바, 해당과목의 과학적 세입추계 및 효율적 예산 운용에 대한 면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2.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검토의견

가. 세출결산 총괄

1)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 개요

- 2015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2조 997억 원이며, 예산 성립 후 이월액 등으로 증액된 예산현액은 2조 1,007억원임.
- 이에 대한 지출액은 2조 709억원이며, 다음연도로 47억원을 명시이월하고 남은 집행잔액은 251억원이며, 이에 따른 불용율은 1.2%임.

<표 2-1. 최근 5년간 세출 결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회계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B)	불용액비율 (B/A)%
2015	2,099,712	2,100,756	2,074,593	2,070,906	25,142	1.20
2014	1,892,131	1,893,000	1,875,546	0	17,454	0.92
2013	1,877,721	1,877,771	1,857,422	712	19,637	1.05
2012	1,334,190	1,365,716	1,350,918	49	14,749	1.08
2011	934,333	935,577	918,354	3,193	14,029	1.5

2) 최근 5년간 세출결산 추이 및 특징

- 최근 5년간의 세출결산 추이(표 2-1 참조)를 살펴보면, 2011년 9,355억원이었던 예산현액은 2015년 2조 1,007억원으로, 1조 1,651억원이 증가하여 2.3배가 증가함.

- 이는 '12년에 영유아보육제도 확대에 이어 '13년에는 전면 무상보육제도로 확대 되면서 동 기간 동안 2년 연속 전년대비 예산규모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며,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예산 증가가 더 이상 크게 발생하지 않은 '14년부터는 전년대비 증가 폭이 완만해지고 있는 추세임.
- 한편, 2015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에 대한 전체 불용율은 1.2%로 나타났고, 최근 5년간 매년 꾸준히 감소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전년대비 다소 증가(0.28%)한 측면이 있음.

3) 최근 5년간, 예산변경 추이

- 2015회계연도 결산 기준,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사업 중 각종 예산변경(이용, 전용, 이체, 변경사용, 예비비사용)이 발생한 건 수는 총 62건으로 나타났고, 20%이상 불용율을 나타낸 사업은 총 10건으로 나타남. 예산변경에 대한 최근 5년간의 추이는 아래 <표 2-2>와 같음.

<표 2-2. 최근 5년간 각종 예산변경 추이> (단위 : 백만원, 건)

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사업총수 및 총예산규모		이용		전용		이체		변경사용		예비비사용		불용 (20%이상)	
	사업 수	예산총액	건 수	금액	건 수	금액	건 수	금액	건 수	금액	건 수	금액	건 수	금액
2015	154	2,100,756			14	12,799	30	63,247	17	9,399	1	1,043	10	3,077
2014	114	1,892,131	-	-	23	783	-	-	7	364	3	155	9	1,389
2013	155	1,877,770	-	-	31	86,481	-	-	17	4,031	-	-	11	2,118

2012	143	1,365,716	-	-	22	3,403	54	99,385	24	2,614	1	28,296	9	1,367
2011	126	935,576	1	5,100	15	2,703	-	-	21	2,772	-	-	16	6,537

- 2015회계연도의 예산변경 사항의 특징은 전년과 비교해 볼 때 전용 건수는 상당히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에, 변경사용의 경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2015회계연도 이체 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2015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것임. 20%이상 불용 건수와 그 금액에 있어서도 전년대비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아래 사업별 검토의견에서 후술하겠지만, 일부 사업에서 여전히 전용액 과다의 문제라든지, 전용 예산의 사유·용도·시기의 부적절 문제, 연례적으로 반복적 과다 불용사업 문제, 예산과다 편성후 타사업으로 감액해주는 문제, 복잡한 예산구조의 문제, 사업에 대한 평가 미흡, 예산변경 과다의 문제 등이 나타남으로서 이의 개선이 필요해 보임.

4) 2015회계연도, 부서별·집행잔액 현황

- 2015회계연도 불용율을 부서별로 구분해보면,
- 보육담당관 소관 예산이 전체예산의 85%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불용율은 0.7%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 여성정책담당관과 가족담당관의 경우 각각 2.3%와 3.8%의 불용율을 보이고 있음.

-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의 경우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예산비중이 크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예산의 7.3%의 불용율을 기록하고 있음.
- 아동복지센터의 불용율은 14.3%로, 여성가족정책실 전체 불용율 1.2%와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불용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3. 부서별·집행잔액 발생 원인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건)

구 분	예 산 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금 액	불용율
합계	2,100,756	2,070,906	4,708	25,142	1.2%
여성정책담당관	85,759	80,100	3,708	1,951	2.3%
보육담당관	1,774,044	1,761,005	-	13,039	0.7%
가족담당관	217,783	208,372	1,000	8,411	3.8%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2,381	20,753		1,628	7.3%
아동복지센터	789	676	-	113	14.3%

5)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 주요내역

-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 주요 사항으로, 전용내역, 이체내역, 변경사용 내역, 20% 이상 불용액 발생 사업내역, 3억원 이상 불용액 발생 사업내역, 예비비 지출 내역을 제시하면 아래 <표 2-4>부터 <표 2-9>과 같음.

< 표 2-4. 2015회계연도 예산 전용 현황 >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사유
			감	증	
총14건		408,098,415	12,799,597	12,799,597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자치단체 자본보조	94,500,000	9,600,000		국공립 전환 시 지원하는 임대보증금 예산 확보를 위해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전용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자치단체 경상보조	-		9,600,000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자치단체 경상보조	168,488,358	870,386		아동학대예방 사업추진에 따른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부족 예산 확보
자치구육아지원종합센터 운영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2,387,390		870,386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16,943,800	800,000		구로구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한 전용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	자치단체 자본보조	3,700,000		800,000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16,516,083	700,000		구로구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한 전용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	자치단체 자본보조	3,000,000		700,000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민간위탁금	14,962,862	528,366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관련 국비 추가지원에 따른 매칭 시비 확보 (국:시비 = 5:5)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사업보조	2,793,230		528,366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자치단체 경상보조	16,580,958	92,600		노후시설어린이집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안전점검관련 예산이 미편성되어 있어 예산을 전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어린이집기능보강(민간어린이집 서비스 향상)	자치단체 경상보조	750,000		92,600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730,000	51,300		서울해바라기센터 임대료 및 관리비 지원을 위한 전용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회복지보조	4,524,029		51,300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민간위탁금	14,434,496	41,105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관련 국비 추가지원에 따른 매칭 시비 확보 (국:시비 = 5:5)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민간대행사업비	263,105		41,105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민간대행사업비	30,000	30,000		광복70주년 기념사업 추진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사무관리비	25,000		30,000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 여성 근로자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168,000	25,000		광복70주년 기념사업 추진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사무관리비	0		25,000	
아동복지센터 운영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	공공운영비	51,221	22,860		준공무직 인건비 확보를 위한 예산
아동복지센터 운영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46,362		22,860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16,566,768	22,519		여성가족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확정내시('15.7)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사유
			감	증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2,204,086		22,519	에 따라 시비보조금 매칭액 확보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19,000	11,981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사업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부족한 우리 시 부담금을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예산 절감분을 활용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사회복지보조	11,739,419		11,981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16,570,248	3,480		2015.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평가위원 수당지급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	4,000		3,480	

<표 2-5. 2015회계연도 예산 이체 내역>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일자	사 유
				감액	증액		
30건				63,247,012	63,247,012		
여성 정책 담당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4,000	4,000	0	2015-01-17	2015년 1월 1일자 조직개편
가족담당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0	0	4,000		
여성 정책 담당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60,000	60,000	0	2015-01-17	2015년 1월 1일자 조직개편
가족담당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0	0	60,000		
여성 정책 담당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법 정운영비보조	5,976,651	5,976,651	0	2015-01-17	2015년 1월 1일자 조직개편
가족담당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법 정운영비보조	0	0	5,976,651		
여성 정책 담당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사업보조	2,017,506	2,017,506	0	2015-01-17	2015년 1월 1일자 조직개편
가족담당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사업보조	0	0	2,017,506		
여성 정책 담당관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16,943,800	16,943,800	0	2015-01-16	2015년 1월 1일자 조직개편
가족담당관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0	0	16,943,800		
여성 정책 담당관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16,570,248	16,570,248	0	2015-01-16	2015년 1월 1일자 조직개편
가족담당관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0	0	16,570,248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일자	사 유
				감액	증액		
여성정책담당관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696,981	696,981	0	2015-01-17	2015년 1월 1일자 조직개편
가족담당관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0	0	696,981		
여성정책담당관	미혼 모·부자 지원기관 운영	사회복지시설법 정운영비보조	100,000	100,000	0	2015-01-17	2015년 1월 1일자 조직개편
가족담당관	미혼 모·부자 지원기관 운영	사회복지시설법 정운영비보조	0	0	100,000		
여성정책담당관	가족역량강화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18,250	318,250	0	2015-01-17	2015년 1월 1일자 조직개편
가족담당관	가족역량강화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0	0	318,250		
여성정책담당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지원	사회복지시설법 정운영비보조	126,166	126,166	0	2015-01-17	2015년 1월 1일자 조직개편
가족담당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지원	사회복지시설법 정운영비보조	0	0	126,166		
여성정책담당관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289,330	289,330	0	2015-01-16	2015년 1월 1일자 조직개편
가족담당관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0	0	289,330		
여성정책담당관	저소득 한부모가족 힐링여행 "아빠 어디가" (주민참여예산, 강동)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0,000	20,000	0	2015-01-17	2015년 1월 1일자 조직개편
가족담당관	저소득 한부모가족 힐링여행 "아빠 어디가" (주민참여예산, 강동)	자치단체경상보조금	0	0	20,000		
여성정책담당관	부부의 행복도 배우면 달라집니다(주민참여예산, 노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0,000	20,000	0	2015-01-17	2015년 1월 1일자 조직개편
가족담당관	부부의 행복도 배우면 달라집니다(주민참여예산, 노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0	0	20,000		
여성정책담당관	위기의가정! 행복을 다시만들다(주민참여예산, 종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5,000	15,000	0	2015-01-17	2015년 1월 1일자 조직개편
가족담당관	위기의가정! 행복을 다시만들다(주민참여예산, 종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0	0	15,000		
여성정책담당관	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3,000	3,000	0	2015-01-17	2015년 1월 1일자 조직개편
가족담당관	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0	0	3,000		
여성정책담당관	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979,022	979,022	0	2015-01-17	2015년 1월 1일자 조직개편
가족담당관	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0	0	979,022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일자	사 유
				감액	증액		
여성정책담당관	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민간대행사업비	30,000	30,000	0	2015-01-17	2015년 1월 1일자 조직개편
가족담당관	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민간대행사업비	0	0	30,000		
여성정책담당관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196,190	2,196,190	0	2015-01-17	2015년 1월 1일자 조직개편
가족담당관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0	0	2,196,190		
여성정책담당관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30,000	130,000	0	2015-01-17	2015년 1월 1일자 조직개편
가족담당관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0	0	130,000		
여성정책담당관	가족학교 운영지원	민간위탁금	18,000	18,000	0	2015-01-17	2015년 1월 1일자 조직개편
가족담당관	가족학교 운영지원	민간위탁금	0	0	18,000		
여성정책담당관	가족학교 운영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90,000	390,000	0	2015-01-17	2015년 1월 1일자 조직개편
가족담당관	가족학교 운영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0	0	390,000		
여성정책담당관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	자치단체자본보조	3,000,000	3,000,000	0	2015-01-17	2015년 1월 1일자 조직개편
가족담당관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	자치단체자본보조	0	0	3,000,000		
여성정책담당관	아이돌보미사업 운영	민간위탁금	174,440	174,440	0	2015-01-17	2015년 1월 1일자 조직개편
가족담당관	아이돌보미사업 운영	민간위탁금	0	0	174,440		
보육담당관	아이돌보미사업 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2,991,546	12,991,546	0	2015-01-17	2015년 1월 1일자 조직개편
가족담당관	아이돌보미사업 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	0	0	12,991,546		
보육담당관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사무관리비	3,000	3,000	0	2015-01-17	2015년 1월 1일자 조직개편
가족담당관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사무관리비	0	0	3,000		
보육담당관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민간위탁금	80,342	80,342	0	2015-01-17	2015년 1월 1일자 조직개편
가족담당관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	민간위탁금	0	0	80,342		
보육담당관	다둥이 행복카드 운영	사무관리비	53,960	53,960	0	2015-01-17	2015년 1월 1일자 조직개편
가족담당관	다둥이 행복카드 운영	사무관리비	0	0	53,960		
보육담당관	저출산극복 인식개선	사무관리비	29,080	29,080	0	2015-01-17	2015년 1월 1일자 조직개편

부서명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일자	사 유
				감액	증액		
가족담당관	저출산극복 인식개선	사무관리비	0	0	29,080		
보육담당관	저출산극복 인식개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0	4,000	0	2015-01-17	2015년 1월 1일자 조직개편
가족담당관	저출산극복 인식개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0	0	4,000		
보육담당관	저출산극복 인식개선	기타보상금	6,500	6,500	0	2015-01-17	2015년 1월 1일자 조직개편
가족담당관	저출산극복 인식개선	기타보상금	0	0	6,500		

<표 2-6. 2015회계연도 예산 변경사용 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사유
			감	증	
총 17건		1,850,179,991	9,399,445	9,399,445	
어린이집운영지원(자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65,469,761	5,078,203		영유아보육료 국고 추가 교부에 따른 예산 변경사용
영유아 보육료(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03,370,374		5,078,203	
어린이집운영지원(자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68,832,498	3,362,737		보육돌봄서비스 사업량 증가에 따른 예산 변경사용
보육돌봄서비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48,328,104		3,362,737	
다문화가족사회통합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750,000	200,000		서남권 다문화가족지원 거주밀집 지역 자치구 사업 추진
다문화가족사회통합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0,000		200,000	
어린이집운영지원(자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60,391,558	160,515		가정양육수당 국고 추가 교부에 따른 예산 변경사용
가정양육수당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9,921,374		160,515	
어린이집운영지원(자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67,617,972	152,514		아동학대예방 사업 추진에 따른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부족예산 확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615,000		152,514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민간위탁금	14,297,865	147,281		보육사 인건비 부족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사회복지보조	42,467,399		147,281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민간위탁금	14,370,663	72,798		쉼터 증설(2개소→3개소)에 따른 국비 증액 지원관련 매칭 시비 확보 (국:시비 = 40:60)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민간위탁금	5,043,450		72,798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사유
			감	증	
이주여성 보호 및 폭력피해 예방	사회복지보조	909,357	57,000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회복지보조	4,851,398		57,000	
성매매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사회복지보조	3,151,760	37,140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회복지보조	4,814,258		37,140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 활성화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14,828	31,520		아동안전지도제작사업 중 일부를 시가 직접추진하기 위하여 통계목 변경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 활성화	민간경상사업보조	0		31,520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16,544,249	28,166		여성가족부 위기가족지원(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국고보조금 확정내시('15.3.18)에 따라 시비보조금 매칭액 확보
가족역량강화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24,166		28,166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민간위탁금	14,393,391	22,728		수요증대로 국비 추가 지원에 따른 매칭 시비 확보(국:시비 = 40:60)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65,577		22,728	
아동복지센터 운영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 확대	사무관리비	122,090	20,000		학술연구용역비
아동복지센터 운영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 확대	연구용역비	0		20,000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사회복지보조	698,000	17,590		여성가족부 성매매피해자 지원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지원금 부족분 재원 마련
성매매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4,500		17,590	
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364,891	6,543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집결지 성매매여성 자활지원	사회복지보조	220,277		6,543	
이주여성 보호 및 폭력피해 예방	사회복지보조	853,801	3,300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 예산 변경사용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	사회복지보조	286,220		3,300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사회복지보조	680,410	1,410		여성가족부 성매매피해자 지원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지원금 부족분 재원 마련
성매매피해 십대여성 자립지원	민간위탁금	264,800		1,410	

<표 2-7. 불용액 20%이상 발생 사업 현황> (단위: 천원)

순번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율 (%)	불용사유
1	결혼이민여성인턴제 운영	227,400	176,750	50,650	22.27	- 인턴 수요 감소로 인해 집행잔액 발생
2	마을 중심 여성카페 설치운영	500,000	378,249	121,751	24.35	- 사업선정단체가 계획대비하여 선정규모 축소됨
3	메르스관련 긴급대응체계 구축(여성시설)	1,043,993	734,186	309,807	29.68	- 시설별 긴급대응을 위한 자체물품 구입 및 메르스 조기종식 등으로 인한 예산집행잔액
4	보육인의 날 행사지원	20,000	15,589	4,411	22.05	- 현수막, 인쇄물 등의 행사비용 절감 및 개최기관 자부담 등에 따른 불용액 발생
5	저출산극복 인식개선	63,085	46,364	16,721	26.51	- 예산절감(출산·양육지원정책리플릿 제작) :12,155천원 ※다동이행복카드적립금으로 예산집행 - 집행잔액(저출산인식개선홍보,UCC공모전 등) :4,566천원
6	위스타트 마을 운영 지원	540,927	300,000	240,927	44.54	- '14.12.31. 사업종료 후 서비스 공백에 따른 민원 발발 우려 2015년 예산 편성, 집행잔액
7	입양아동가족지원	5,810,942	3,824,454	1,986,488	34.19	- 당초 입양보조금 2,155명, 입양비용 331명분, 숙려기간 모자지원 272명,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64명에 대한 예산 편성하였으나 실제 대상아동 1,696명, 135명, 205명, 59명으로 지원대상 아동 수 감소(불용액 예상으로 국비 감액 변경내시(9월)에 따른 시비 집행 잔액)
8	서울온드림다문화가족교육센터 운영 지원	38,433	0	38,433	100.00	- 서울온드림교육센터를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소관 건물로 이전함에 따라 임대료 지급 불필요 (서울의료원→서남권글로벌센터)
9	다문화 행복나눔 프로젝트	50,000	39,900	10,100	20.20	- 일정 조정에 따른 하반기 사업수행으로 사업규모 축소
10	2015 다문화가족소외계층 한가족 문화행사	300,000	95,000	205,000	68.33	- 메르스 등으로 인해 사업대상 및 기간 단축으로 사업 축소

<표 2-8. 3억원 이상 불용액 발생 사업 내역> (단위: 천원)

순번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율 (%)	불용사유
1	메르스관련 긴급대응체계 구축(여성시설)	1,043,993	734,186	309,807	29.68	-시설별 긴급대응을 위한 자체물품 구입 및 메르스 조기종식 등으로 인한 예산집행잔액
2	누리과정 보육료	277,416,480	268,369,030	9,047,450	3.26	-서울시 교육청 부담 사업으로, 누리과정 대상인원이 당초 교육청 추계보다 감소함에 따라(예산편성 105,082명 → 실제 인원 100,441명) 누리과정 보육료 집행잔액 발생
3	어린이집 지원(보조)	129,965,338	126,965,667	2,999,671	2.31	-서울시 교육청 부담 사업으로, 누리과정 대상인원이 당초 교육청 추계보다 감소함에 따라(예산편성 105,082명 → 실제 인원 100,441명) 누리과정 보육료 집행잔액 발생
4	시간제보육 운영지원(보조)	3,447,867	2,809,605	638,262	18.51	-국고보조 매칭사업으로, 국고보조 변경내시(감액)에 따라 집행잔액 발생

순번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율 (%)	불용사유
5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16,143,800	14,662,421	1,481,379	9.18	-계획인원대비 지원인원 감소(아동양육비 : 계획 13,116명/실지원 11,114명)
6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원	15,816,083	14,410,370	1,405,713	8.89	-계획인원대비 지원인원 감소(교육비 : 계획 13,160명/실지원 9,423명)
7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56,788,464	56,283,432	505,032	0.89	-아동양육시설 등 소재 17개 자치구에 필요 신청액을 재배정하였으나, 과다 신청으로 자치구에서의 집행잔액 발생
8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지원	4,813,860	4,389,602	424,258	8.81	-계획인원대비 지원인원 감소(계획 : 3,500명, 실 지원: 3,270명)
9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32,937,326	32,160,573	776,753	2.36	-센터 폐업 7개소, 휴지 1개소에 따른 지원대상 감소
10	입양아동가족 지원	5,810,942	3,824,454	1,986,488	34.19	-당초 입양보조금 2,155명, 입양비용 331명분, 숙려기간 모자지원 272명,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64명에 대한 예산 편성하였으나 실제 대상아동 1,696명, 135명, 205명, 59명으로 지원대상 아동 수 감소(불용액 예상으로 국비 감액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집행 잔액)
11	요보호 아동 그룹홈 보호	3,794,218	3,432,565	361,653	9.53	-당초보건복지부국비64개소로편성되었으나중도시설폐지(4개소)에따른운영비및인건비불용액발생
12	외국인 지원 시설 설치운영	8,866,345	7,892,818	973,527	10.98	-서울글로벌센터,외국인근로자센터등센터운영(12개소)에 따른 민간위탁금(계약심사및인건비절감액등) 집행잔액 -글로벌빌리지센터등(8개소)자치단체경상보조금(인건비절감액등) 집행잔액
13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 양육지원	9,616,206	9,309,799	306,407	3.19	-여성가족부 가내시 대비 확정내시액 감소

<표 2-9. 예비비 지출 내역> (단위: 천원)

예산과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집행잔액	예비비 지출사유
메르스관련 긴급대응체계 구축 (여성시설)	1,043,993	734,186	309,807	메르스 관련 대응

나. 세부사업별 검토의견

1)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사업

◆ 사업 및 결산 개요

- 동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등 지원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을 강화하려는 사업으로,
 - 주요사업 내용은 이혼,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최저생계비 130%이하 한부모가구에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하는 것임.
 - 동 사업의 재원은 국비와 시비가 50: 50의 매칭으로 이루어지는 국비보조 사업임.
- 2015회계연도 예산액은 169억 4,280만원이고, 예산성립 후 (감)전용을 통해 8억원이 감액된 예산현액은 161억 4,380만원임. 이 가운데 146억 6,242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14억 8,137만원은 불용되어, 불용율은 9.2%로 기록됨.

<표 2-1.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사업, 2015회계연도 결산조사>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	변경 사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율 (%)
일반보상금	16,943,800	△800,000		16,143,800	14,662,420	1,481,379	9.2
사회보장 적수혜금	16,943,800	△800,000		16,143,800	14,662,420	1,481,379	9.2

◆ 불용액 및 불용율 과다의 문제

-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사업에서의 불용율(9.2%)은 여성가족정책실의 총 불용비율 1.2%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더욱이, 불용액의 규모는 14억 8,137만원으로 그 절대적인 수준 또한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 할 것임.
- 이처럼 특정 사업에서의 불용액이 크다는 것은, 이로 인해 해당 불용액만큼 여타의 다른 사업에도 활용하지 못하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학적 실인원 추계 노력 등 그 개선이 필요하다 할 것임.

◆ 감액 전용하고도 불용액 과다한 문제

- 위 <표 2-1>에서 볼 수 있듯이, 동 사업은 당초예산에서 8억원액을 타 사업(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에 감액 전용 해 주고도 불용액이 14억 8,137만원이 남았는데, 여기서 불용액에 감액전용 해 준 예산까지를 포함한다면, 당초 예산액 대비 14%에 이르는 22억 8,137억원이 미집행 된 것이나 다름없다 할 것인 바,
- 이는 당초의 예산 계획이 수요에 기반한 과학적 산출근거로 추계하였다기 보다는 전례답습적으로 과도하게 측정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연례적 예산운용 미흡 문제, 2016년으로 이어질 가능성 커**

○ 실제 동 사업은 2014회계연도 결산시에도 총 122억 2,002만원 가운데, 불용액이 7억 4,480만원으로 6.1%의 불용율을 기록한 바 있음.

- 전년도 예산운용 현황이 이러한데도, 2015회계연도의 경우 타사업예산으로 8억원을 보내주고도(감액 전용) 불용액이 14억 8,137만원에 이르고 있는바, 이는 2014년에 이어 2015회계연도에도 예산운용에서의 미흡함이 크게 나타난 사례라 할 것임.

<표 2-2.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사업, 최근3년간 결산조사> (단위: 천원)

연도	예산액	예비비 사용	전용	변경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율 (%)
2013	11,430,298			709,000	12,139,298	11,974,813	164,486	1.4
2014	12,200,240				12,200,240	11,455,432	744,808	6.1
2015	16,943,800		△800,000		16,143,800	14,662,421	1,481,379	9.2
2016	16,400,000		-	-	-	-	-	-

- 올해 2016년의 경우, 2015년 당초예산액(169억 4,380억원) 대비 3%(5억 4,380만원)를 감액하여 164억원을 집행할 예정이지만, 2015년 예산운용 결과 실제 146억 6,624만원의 지출에 그쳤던 점을 고려해본다면,

- 2016년예산에서 감액한 **5억원**은 실제 전년도예산현액 대비하여 2억 5,620만원의 삭감효과(1.6% 삭감)에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5년의 집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2016년 예산의 경우에도 당초예산 대비하여 상당한 집행 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중앙부처에 적극적 정책건의 등을 통한 실수요예측 강화 필요**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 사업의 예산과다 추계 및 집행잔액 과다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대상자에 대한 보다 과학적 추계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동 사업의 경우 국고보조사업으로 중앙정부에서 예산의 편성에 대한 전반적인 설계를 하고 있으므로, 예산 추계상 서울시의 개입 여지가 일정부분 한계가 있지만,
 - 실수요 예측치는 서울시에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향후 실수요 예측을 보다 면밀하고 정확하게 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필요한 곳에 시의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불용율을 최소화 해야 할 것임. 이의 개선을 위해서라도, 중앙부처에 정책건의 등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해 보임.

2)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

◆ 사업 및 결산 개요

- 동 사업은, 보호필요아동에게 좋은 성장환경을 조성 제공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것으로, 지방이양 사무로서 전액 시비 지원 사업임.
- 동 사업의 2015년 당초 예산액은 총 574억 5,346만원이며, 6차례의 예산변경(감액전용 및 변경 5회, 증액전용 1회)을 실시한 예산현액은 567억 8,846만원임. 이 중 562억 8,343만원을 집행하여, 5억 503만원(불용율 8./9%)이 불용된 것으로 결산 보고됨.

<표 2-4.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 2015회계연도 결산조서>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	변경사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율(%)
아동복지시설운영지원	57,453,461	△569,471	△95,526	56,788,464	56,283,432	505,032	8.9
사무관리비	18,400			18,400	10,863	7,536	41.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800			4,800	4,796	4	0.1
민간위탁금	14,962,862	△569,471	△242,807	14,150,584	13,950,029	200,555	1.4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42,467,399		147,281	42,614,680	42,317,473	296,936	0.7

◆ 예산 변경 횟수 과다의 문제

○ 동 사업은 2015년 한해 동안 총 5건의 감액 예산변경을 실시하였는데, 3건은 타 사업 추진을 위한 감액 전용이며, 2건은 변경사용을 위해 감액한 것으로 나타나, 1개의 동일 사업내에서 예산변경 횟수가 과다한 사례로 지적됨.

<표 2-5. 2015회계연도 감액 변경 현황>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예산 전용			예산 변경사용			예산변경 사유
		감액	증액	날짜	감액	증액	날짜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민간위탁금	528,366	0	12-03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관련 국비 추가지원에 따른 매칭 시비 확보(국비:시비=50:50)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사업 보조	0	528,366	12-03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민간위탁금	41,105	0	12-03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관련 국비 추가 증액 지원에 따른 매칭 시비 확보(국비:시비=50:50)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민간대행사업비	0	41,105	12-03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민간위탁금				72,798	0	12-03	센터 증설(2개소→3개소)에 따른 국비 증액 지원관련 매칭 시비 확보(국비:시비=40:60)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민간위탁금				0	72,798	10-28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민간위탁금				22,728	0	12-03	수요증대로 국비 추가 지원에 따른 매칭 시비 확보(국비:시비=40:60)
입양 및 가정위탁 아동 심리치료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0	22,728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민간위탁금				147,281	0	12-18	보육사 인건비 부족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				0	147,281		
합계		569,471			242,807	147,281		812,278

- 예산변경 관련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예산변경 사유는 5건 중 4건이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이에 매칭이 필요한 시비분 확보를 위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5건 모두의 승인 시기는 4/4분기에 이루어졌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음.
- 예산의 변경사유 및 승인시기와 관련해서는, 여타의 국비 매칭사업의 경우 연말에 집중적으로 국비 추가 지원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른 시비 매칭분 확보를 위한 전용(또는 변경사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연말을 기하여 예산변경 횟수가 과하게 증가하는 것은 예산을 충당해주는 사업 기준으로 볼 때, 불용율을 낮추는 방책으로 감액 조정을 택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는바, 이의 개선이 필요해 보임.

◆ '민간위탁금'의 과다 측정 개선 필요

- 상기에서 살펴보았듯이, 동 사업에서 예산변경이 발생한 구체적 통계목은 시립시설의 운영비(시 알로시오초교와 꿈나무마을위탁운영,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위탁운영, 아동자립지원사업단 위탁운영비)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에서 발생하였고, 5건 모두를 감액 조정한 것임.
- 2015회계연도 시립아동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은

총 149억 6,286만원을 편성되었으나, 2015년 한해동안 5차례에 걸쳐 총 8억 1,227억원을 타사업(또는 타 통계목)을 위해 감액 조정하였고, 여기에 덧붙여 최종 집행 잔액도 2억 55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해 본다면, 민간위탁금에 대한 예산이 당초에 과도하게 편성된 측면이 있다 할 것인바, 이의 개선이 필요해 보임.

- 이에 서울시에서는 ‘알로시오 학교’가 ‘15년 2월까지 그 운영을 마치고 폐교하면서 이에 따른 운영비¹⁾가 남게 됨으로써, 민간위탁금에 대한 불용액과 타사업으로의 감액조정이 가능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 ‘알로시오 학교’ 폐교 건은 이미 예산편성단계에서 논의되고 있었고, 설령 폐교 시기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 예산을 사전에 삭감하지 못하였다면, 이후 ‘15년 7월 당시 ‘2015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관련 예산을 감액 추경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조치라 할 것이나, 그렇지 않았던바, 민간위탁금에 대한 과도한 예산편성에 대한 지적과 개선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여겨짐.

1) 알로시오예산총액은 14억 3,500만원을 편성함

◆ **연례적 집행잔액 과다 문제 개선 필요**

- 동 사업의 최근 4년간의 예산운용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2-6>와 같이 연례적으로 집행 잔액이 과다한 문제가 있음.

<표 2-6. 최근 5년간 결산 및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당초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
2012	44,034,611	0	-309,484	43,725,127	43,099,822	0	625,305
2013	46,388,708	0	1,860,871	48,249,579	47,215,862	0	1,033,717
2014	47,718,292	0	0	51,648,611	50,778,335	0	870,276
2015	57,453,461	0	-664,997	56,788,464	56,283,432	0	505,032
2016	60,175,781	-	-	-	-	-	-

- 2013년 불용액은 10억 3천만원(예산현액 대비 2.1%)이고, 2014년 8억 7천만원(예산현액 대비 1.7%), 2015년 5억 503만원(예산현액 대비 0.9%)으로, 총예산규모 대비해 볼 때 비록 그 상대적 비율은 다소 낮다고 할 수 있겠으나, 집행잔액의 절대적 규모만을 놓고 볼 때, 한해 평균(4년간 평균) 7억 5,815만원에 이르고 있는바, 그 규모가 적지 않다 할 것임.

- 따라서, 연례적으로 집행 잔액이 과다한 부분에 대하여는 명확한 설명과 해소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아동복지시설 운영평가 강화를 통한 보조금 투명운영 필요

- 지난 2016년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논의 되었듯이, 아동양육시설 운영에 대한 최근의 지도·점검결과(2013년 9월 서울시 감사관 정책감사 결과²⁾)에 따르면 감사대상기관 4곳에 대한 지적사항은 총 37건으로, 주로 보조금(생계비)을 시설장 개인용으로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등 보조금 및 후원금등에 대하여 용도대로 집행하지 아니하는 등 시설 회계 관련 문제들이 다수 발견됨.
- 앞서 살펴보았듯이, 아동양육시설운영을 위해 한해동안 지원되는 시비지원금은 약 601억원(2016년 기준)에 이르는데, 동 예산을 투명하고 책임있게 집행하고 관리하지 못한다면, 요보호아동에게 제공되는 필요한 서비스가 그만큼 허술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만큼 시민의 혈세도 헛되이 쓰이는 것이나 다름없다 할 것임.
- 이런 점에서, 서울시에서는 아동양육시설의 운영 평가 등을 강화하여 시설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강력하고 책임 있는 행정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이와 관련하여, 현행 법체계상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의

2)<정책감사 개요> 감사대상기관: 강남보육원, 영락보린원, 삼동소년촌, 경생원, 감사범위: 2011. 1~ 2013. 9월, 감사기간 : 2013. 9. 10~10, 중점감사사항: 보조금의 용도대로 집행여부, 자체점검 등 지도·감독 이행 여부, 아동의 인권적, 물질적 보장여부, 법인전입금, 후원금, 자립지원계좌 관리실태, 기능보강사업 계약, 시공, 화재, 재난 등 시설 관리 실태

일차적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되어 있어, 매년의 지도·점검에 대한 책임을 자치구가 맡고 있으나, 실제 매년의 자치구를 통한 지도·점검의 내용은 형식적 수준에 그치고 있고, 이로써 크게 적발되는 사안의 거의 없는 상황임.

- 그러나,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서울시 차원의 종합감사 등을 실시될 경우 매년의 지도·감독의 내용과 다르게 대대적인 지적사항이 드러나고 있는바, 따라서 향후 서울시는 시비보조금이 들어가는 만큼의 지도·감독과 보조금에 대한 권한 및 권리 행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고, 이의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3) '마을중심여성카페 설치·운영' 사업 : '15년 신규사업 사례

◆ 사업 및 결산 개요

- 동 사업은, 건강·육아·문화 등 여성들의 관심사항에 대해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지원하려는 것으로, 자치구나 공공기관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여성·가족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거나, 민간이 자치구와 5년 이상 무상임대 협약을 맺는 경우 규모별로 최대 3천만원까지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15년 신규사업임.

- 동 사업은, 당초 2억원으로 심의·의결되었으나, 이후 2015년 7월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이라 함)을 통해 3억원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5억원으로 확정됨. 이 가운데 3억 7,824만원이 집행되고, 1억 2,175만원이 불용되어, 불용율을 24.4%로 기록됨.

<표 2-7. '마을중심여성카페 설치·운영' 사업, 2015회계연도 결산조사>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	변경사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율 (%)
계	500,000 (추경액 300,000)			500,000	378,249	121,751	24.4
사무관리비	500,000 (추경액 300,000)			500,000	378,249	121,751	24.4

◆ **본예산시 삭감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 확보한 후, 사업비의 1/4가량을 불용한 사례**

- 동 사업은 지난 2015년 본예산 편성시 신규사업으로 최초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왔던 사업임. 동 사업에 대한 예산심의 당시 보건복지위원회(예비)심사의 주요 논의 사항은,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동 예산에 대하여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는 명분만 있을 뿐, 공공기관의 유휴공간의 활용 방안 및 민간에의 협조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가 미흡한 채로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면서, 시범 운영을 통한 사업성과를 보고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결국 본 예산안으로 편성해온 예산의 일부인 1억원을 삭감되어 총 2억원으로 의결함.

- 그러나, 동 사업은 2015년 7월 제1회추경안 심의 시 3억원이 추가 편성되어, 본예산 편성시보다 오히려 더 많은 예산액으로 최종예산안이 결정되었던바, 이처럼 본예산에서 삭감 된 예산이 추경에서 재편성·증액 되는 것은 예산편성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됨.

- 더욱이, 이렇게 확보한 예산은 결국 1/4가량이 불용되었던바, 동 사업은 당초 예산계획에서부터 이후 집행의 전 과정에서 예산 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가 있는 사업으로 평가됨.

◆ 부실한 사업계획 및 타당성 낮은 신규사업 추진 문제 개선 필요

- 동 사업의 불용사유에 대하여,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선정단체가 계획 대비하여 선정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본예산심의 시 이미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지적되었던 것으로, 예산계획의 미흡이 가져온 예견된 결과라 할 것임.

- 동 사업은 2015년 신규사업으로 출발하였으나, 위에서 살펴 보았듯이 한 해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채 2015년을 끝으로 종료함.

- 이처럼 부실한 사업계획과 타당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못한 예산집행은 서울시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시민의 혈세가 불요불급한 곳에 쓰여 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향후 이와 같은 문제를 지닌 신규사업 추진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와 개선이 요구됨.

4) '입양 아동 가족 지원' 사업

◆ 사업 및 결산 개요

- 동 사업은 보호필요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경제적·제도적 지원을 통해 국내입양 활성화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 세부사업 가운데 '장애아동 및 일반아동 입양양육보조금 및 수당 지원 등'은 입양특례법 제35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에 따른 국비매칭(국시비=6:4) 사업이며, '입양축하금 및 교육비(고등학생)' 지원은 「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라 전액 시비로 지원됨.
- 동 사업의 2015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58억 1,094만원으로 동일하고, 이 가운데 38억 2,445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9억 8,649만원이 불용되어, 불용율은 34.2%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표 2-8. '입양아동가족지원 사업', 2015회계연도 결산조서>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	변경 사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율(%)
입양아동가족지원	5,810,942			5,810,942	3,824,454	1,986,488	34.2
사회보장적수혜금	5,810,942			5,810,942	3,824,454	1,986,488	34.2

◆ **입양아동가족 감소 추세 미반영으로 인한 불용액 및 불용율 과다 문제**

○ 최근 5년간의 입양가족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 27억원이던 예산액은 2015년 58억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매년의 예산 증가만큼이나 매년의 불용액도 점차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는데, 2014년 불용액은 25%까지 증가했고, 이어 2015년 불용액은 34%에 이르고 있음.

<표 2-9. 최근 5년간 입양아동가족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천원)

연도	당초예산	이·전용· 변경사용	예산현액	집행	불용	불용율(%)
2011	2,768,826	156,829	2,925,655	2,875,325	50,330	1.7
2012	3,912,565		3,912,565	3,549,873	392,692	10.0
2013	4,262,835	-	4,262,835	3,876,891	385,944	9.1
2014	5,400,633	△18,000	5,382,633	4,035,314	1,347,319	25.0
2015	5,810,942		5,810,942	3,824,454	1,986,488	34.2
2016	5,116,810	-	-	-	-	-

○ 이처럼 매년 불용액이 크게 증가한데는, 현행 『입양특례법』이 2011년 전부개정 되면서 가정법원 허가제와 양부모 자격이 강화됨으로 인해 국내 입양이 급감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로인해 2014회계연도에 이어 2015년도에도 불용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임.

- 이는 아래 <표 2-10>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관련법 개정 이후 2012부터 입양아동수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10. 연도별 입양 아동수 > (단위: 명)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국내	1,461	1,332	1,388	1,306	1,314	1,462	1,548	1,125	686	637	683
국외	2,101	1,899	1,264	1,250	1,125	1,013	916	755	236	535	374
계	3,562	3,231	2,652	2,556	2,439	2,475	2,464	1,880	922	1,172	1,057

- 그런데, 그동안 이처럼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 입양가정 감소 현상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차원의 예산은 감소하지 않아, 서울시 차원에서도 국비 내시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이에 따른 불용액이 크게 증가한 측면이 있음.
- 이러한 입양여건이 크게 변화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2015년에도 동 예산의 불용액 과다 문제는 동일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음.

<표 2-11. 2015년 예산액 대비 실집행액 내역 >

(단위: 천원)

구분	2015				2016	
	예산액	산출근거	집행액	집행근거	예산액	산출근거
일반아동입양양육수당 지원	3,880,000	2,155명	2,906,936	1,696명	3,676,507	2042명
장애아동입양양육보조금	506,140	64명	442,488	59명	596,023	70명

입양비용(수수료)지원	901,150	331명	262,130	135명	452,007	165명
숙려기간 모자지원	190,400	272명	95,560		256,193	360명
입양 축하금 (시비)	104,000	일반아동 240명 장애아동 10명	90,000	205명	78,000	일반아동 70명 장애아동 4명
교육비 (시비)	229,252	362,700원*39 5명*4분기*0.4	27,340		58,080	363,000원* 40명*4분기
합계	5,810,942		3,824,454		5,116,810	

◆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보완 필요

- 입양아동가족지원 사업의 취지는 보호가자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에게 건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 동 사업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기 위해서는 현행의 법체계상 입양가족이 점차로 줄어드는 현상에 대한 그 원인 등을 파악하여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앞서 살펴보았듯이 관련법 개정 이후 입양가정은 당분간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실인원 대비 계획 수립토록 중앙부처에 건의 등 예산편성 철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요구됨.

5) '어린이집 운영 지원(자체)' 사업

◆ 사업 및 결산 개요

- 동 사업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운영비 및 저소득층 아동의 보육료 지원 등을 통한 영유아 건전육성 및 여성의 경제 사회적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 주요사업은, 보육정책위원회 등 심의자문 위원회 운영과보육사업 안내 책자 인쇄 발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대체교사, 보육교사처우개선비, 종교시설 인건비 지원, 시간연장근무수당 지원, 365일 열린어린이집 운영 지원,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어린이집 시설 운영비 지원(영어반 운영비지원, 보육교사 보수교육 중식비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중식비 지원, 365일 열린어린이집 지원), 민간어린이집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민간 어린이집 일반아동 보육료 지원, 서울형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천기저귀 지원사업, 저소득층 대상 현장학습비를 지원함.
- 동 사업의 2015회계연도 당초예산액은 1,700억원이 편성·심의·확정되었으나, 이후 예산집행과정에서 타사업으로 97억원을 감액 조정한 예산현액은 1,602억원임. 2015년 집행액은 1,602억원이고, 불용액은 180만원으로 불용율은 0%에 가까움.

<표 2-12. '어린이집 운영 지원(자체)' 사업, 2015회계연도 결산조사>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	변경사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율(%)
계	170,010,098	△962,986	△8,753,969	160,293,143	160,291,338	1,805	0.00
사무관리비	50,100			50,100	48,404	1,696	3.39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12,000			12,000	11,892	108	0.90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169,947,998	△962,986	△8,753,969	160,231,043	160,231,043	0	0.00

◆ 예산변경 횟수 및 금액 과다 문제

○ 동 사업은 2015년 한 해 동안 총 6차례(전용 2건, 변경사용 4건)의 예산변경이 이루어졌는데, 6차례 모두는 타 사업 추진을 위한 감액 변경한 것이며, 이에 따른 총 금액은 100억원에 가까운 97억 1,696억원을 감액한 것으로 나타남.

<표 2-13. '어린이집 운영 지원(자체)' 사업, 2015회계연도 예산변경 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전용		변경사용		승인 일자	사유
		감액	증액	감액	증액		
어린이집 운영지원 (자체)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870,386	0			08-26	아동학대예방 사업추진에 따른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 부족 예 산 확보
자치구육아종합지 원센터 운영지원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0	870,386				
어린이집 운영지원 (자체)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92,600	0			08-17	보육담당관-14823(2015.8.5.)호'어 린이집시설물 안전점검추진계획 관련,노후시설어린이집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의필요성이 제기되 고있으나 안전점검관련예산이 미 편성되어있어 예산을 전용하게 사업을 추진하고자함
어린이집 기능보강 (민간 어린이집 서 비스 향상)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0	92,600				
어린이집 운영지원 (자체)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3,362,737	0	12-16	보육돌봄서비스 사업량 증가에 따른 예산 변경사용
보육돌봄서비스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0	3,362,737		

어린이집 운영지원 (자체)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160,515	0	12-16	가정양육수당 국고 추가 교부에 따른 예산 변경사용
가정양육수당 지원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0	160,515		
어린이집 운영지원 (자체)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5,078,203	0	12-16	영유아보육료 국고 추가 교부에 따른 예산 변경사용
영유아 보육료(보조)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0	5,078,203		
어린이집 운영지원 (자체)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152,514	0	12-16	아동학대예방 사업 추진에 따른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부족예산 확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0	152,514		

○ 원칙적으로 예산은 편성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된 계획이므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이 있을 수 있고, 이는 최소한의 것이어야 함.

○ 그러나, 동 사업의 경우 예산변경의 횟수나 그 규모는 집행과정에서의 부분적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이라고 말하기가 무색할 정도로 그 횟수와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그 원인과 사유에 대하여 명백히 분석해 보아야 할 사안으로 판단됨.

◆ 매년 과다 편성 이후 타사업으로 감액 전용해 주는 문제

- 더욱이 100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타 사업으로 감액해 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확보된 예산 가운데 과다계상 또는 불요불급성 예산이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것임.

- 감액 변경 사유에 대하여, 서울시에서는 ‘영유아 보육료 국고 추가 교부에 따른 예산 확보’ 및 ‘보육돌봄서비스 사업량 증가에 따른 예산 확보’ 등을 위하여,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취소에 따른 서울형어린이집 지원비’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실지급인원 감소로 인한 어린이집 운영지원비’, 그리고 ‘만3-5세 아동차액보육료 집행잔액 예상액’을 감액해 준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그런데, 세부사업인 ‘서울형어린이집 지원비’의 경우 2013회계연도에도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취소에 따른 어린이집지원비 전용’이라는, 동일한 사유로 48억원을 감액 전용했던 점을 고려해보면, 동 세부사업에서 2015회계연도에도 40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감액 전용한 것은 매년 동 예산이 과다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증거라 할 것임.

◆ **연례적 예산변경 횟수 및 금액과다 문제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 안됨**

- 동 사업의 최근 3년간의 결산결과를 살펴보면, 매년 타사업으로의 예산 감액변경이 빈번히 발생해 왔는데, 2013년에는 48억원, 2014년 3억원, 2015년에는 97억원을 감액함.
- 참고로, 여기 최근 3년간 감액해 준 예산과목은 자치구로 배정해주는 형태로 지원되는 ‘지방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공통적으로 감액조정이 발생하고 있음.
- 후술하겠지만, 이처럼 연례적으로 대규모의 예산 감액변경이 일어날 수 있는 예산구조에 대한 지적은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예산 및 결산 심사때 마다 지적하고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개선됨이 없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고 보여짐.

<표 2-14. '어린이집 운영 지원(자체)' 사업, 최근 3년간 예산변경 내역> (단위: 천원)

회계 연도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변경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 액	불용율 (%)
			이용	전용	변경사용	예비비				
2013	자치단체경 상보조금	166,890,492		△4,828,723			162,061,769	162,061,769	0	0.00
2014	자치단체경 상보조금	164,756,571		△11,150	△289,128		164,456,293	164,456,293	0	0.00
2015	자치단체경 상보조금	169,947,998		△962,986	△8,753,969		160,231,043	160,231,043	0	0.00

◆ 연말에 집중되는 예산감액 변경 문제 및 타사업의 예산확보를 위한 전용창구 역할 문제 개선 필요

- 위의 <표 2-13>('어린이집 운영 지원(자체) 사업, 2015회계연도 예산변경 내역)을 살펴보면, 2015회계연도에 발생한 6건의 예산감액 변경 사례 가운데 3건은 연말(승인일자 12월 16일자)을 기해 집중적으로 변경이 이루어졌음.
- 일반적으로 연말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시기라는 점을 어느정도 감안하더라도, 연말을 기하여 예산변경 횟수가 과하게 증가하는 것은 예산을 충당해주는 사업 기준으로 볼 때, 불용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용 등의 예산 감액 조정을 택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 할 것임.
- 이런 점에서, 동 사업은 특정 통계목(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매년 과다한 예산을 편성해 두었다가 다른 예산의 부족분을 메꿔주는 형태로 감액 예산변경을 해주는 창구 역할을 해온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음.
- 이는 그동안 '자치단체경상보조금' 통계목에서 매년 대규모의 예산 감액조정이 있었던 사례만으로도 그 증거가 되는데, 동 통계목의 경우, 서울형어린이집 지원 등을 위한 시비 100% 사업인 만큼 국비매칭 사업에 비해 융통성이 있다는 점을 활용

하여, 타 예산의 부족분을 확보하였다가 타 사업의 필요예산의 확보수단으로 활용 되어졌을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다음연도 예산 편성시에도 기존 사업에 대한 예산 규모를 줄이지 않으면서도, 의회의 예산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은 타 특정사업예산까지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되는바, 이의 개선이 필요함.

◆ 복잡한 예산구조 개선 필요

- 동 사업은, 예산규모가 타 사업에 비하여 매우 큰 사업임에도 아래 <표 2-15>에 제시하였듯이, 하위 통계목은 오로지 4개 (①사무관리비, ②시책추진업무추진비, ③공공운영비, ④자치단체경상보조금)로만 구성되어 있고,
 - 통계목에 부수되는 세부사업이 매우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지만, 예·결산서에는 통계목까지의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 <표 2-15>의 음영부문에 해당하는 ‘대체교사 인건비’등의 총 10개의 세세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예산 및 결산서에서도 볼 수 없는바, 이의 정보를 알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 특히, 통계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예산액 1,699억원)’에 부수되는 하위 세부사업들 각각은 그 예산규모도 크고, 세세하여,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라는 유일한 통계목으로만 하위 사업들을 구분하기에는 그 내용이 너무 광범위한 측면이 있고, 각 하위 사업별 내용에 있어서도 개별의 예산사업으로 구별해도 되는 사유가 충분한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표 2-15. '어린이집 운영 지원(자체)' 사업, 세부사업 결산내역> (단위: 천원)

구분	2014년			2015년		
	예산	결산	비고 (예산변경사항 등)	예산	결산	비고 (예산변경사항 등)
계	164,856,071	164,555,624		(×1,367,040) 170,010,098	(×1,367,040) 160,293,143	
①사무관리비	87,500	87,416		50,100	50,100	
②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00	11,915		12,000	12,000	
③공공운영비	-	-		-	-	
④자치단체경상보조금	164,756,571	164,456,293	11,150 전용 289,128 변경	(×1,367,040) 169,947,998	(×1,367,040) 160,231,043	962,986 전용 8,753,969변경
보육교직원인건비	59,057,454	58,757,176		(×1,367,040) 64,227,074	(×1,367,040) 60,144,276	
대체교사 인건비	1,062,000	1,062,000		1,062,000	1,042,572	
처우개선비	39,593,080	39,593,080		40,692,600	36,629,230	
종교시설 인건비	220,514	220,514		220,514	220,514	
시간연장 근무수당 등	993,120	692,842		703,320	703,320	
365 열린어린이집	149,040	149,040		122,544	122,544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17,039,700	17,039,700		(×1,367,040) 21,426,096	(×1,367,040) 21,426,096	
시설운영비 지원	15,763,300	15,763,300		15,970,500	15,438,425	
영아반 운영비	13,044,300	13,044,300		13,044,300	12,512,225	
보육교사 중식비	2,550,000	2,550,000		2,727,000	2,727,000	
보수교육 중식비	160,000	160,000		192,000	192,000	
365 열린어린이집	9,000	9,000		7,200	7,200	
보육료차액지원(저소득)	784,650	784,650		861,750	822,851	
보육료차액지원(일반)	-	-		7,084,000	6,012,899	
저소득층 현장학습비 지원	966,000	966,000		966,000	966,000	
천기저귀 지원	662,880	662,880		690,400	690,400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	87,522,287	87,522,287		80,148,274	76,156,192	

- 앞서 언급하였듯이, 실제 이 사업은 최근 3년간 연평균 49억 원에 달하는 (2013년 48억원, 2014 3억원, 2015년 97억원) 대규모의 예산 감액 전용이 발생하고 있으나, 예산서 및 결산서상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느 세부사업에서 예산변경이 발생하였는지를 전혀 파악할 수 없는 구조임.
- 따라서, 예산서상에 세부항목이 드러나지 않음으로써, 포괄예산 처럼 사용되어지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예산명세 문제를 해소하여 시민으로 하여금 예산정보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보다 투명한 예산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과목을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서울형어린이집지원' 등 주요 세부사업 별도 예산으로 분리 필요

- 이를테면, '서울형어린이집 지원'이라는 세부사업의 경우, 801억원(2015년 예산 기준)에 이르는 매우 큰 예산규모를 갖고 있고, 사업이 갖는 의미와 상징성을 고려해 볼때도 별도의 예산 사업으로 구분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것으로 생각됨.
- 또한, 또 다른 통계목으로 구분되는 '사무관리비'와 '시책업무 추진비'는 보육담당관內 자문위원회인 보육정책위원회 운영지

원에 관한 예산과 보육담당관의 시책추진비로서, 그 용도가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및 아동의 보육료 지원을 위한 동 예산사업의 목적과는 상이한 측면이 있는바, 별도의 예산 사업으로 분리시키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통계목 '지방자치단체경상보조금'집행에 대한 정확한 결산 불가능한 문제**

- 동 사업의 총 예산규모는 1,700억원(2015 기준)으로, 1개 단독 예산 사업으로 그 규모가 매우 큰 사업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불용율은 180만원(불용율 0.0%)으로, 예산 규모와 견주어 볼때도, 타사업의 불용율과도 비교해 볼 때 그 불용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며, 결산상 숫자로만 보면 집행율 100%에 가까운 완벽한 사업이라 할 것임.

- 여기서, 통계목인 '지방자치단체경상보조금'의 집행 절차를 살펴 보면,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내려 보내면, 자치구에서 다시 어린이집으로 집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결산서상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해당 금액을 내려 보내는 순간 집행액 100%의 완벽한 집행 실적을 갖게 됨.

- 그런데, 실제 동 사업비에 대한 자치구별 정산자료인 반납고지 금액은 다음연도 5월경이나 되어야 집계됨. 그런데 아래 <표 2-16>에서 볼 수 있듯이, 그 규모를 살펴보면, 2015회계연도

기준 반납고지액(안)은 95억원에 이르고 있어, 예산액의 약 6.1%가량이 반환되고 있는 실정임.

- 그런데도, 이러한 반환금은 다음연도의 세외수입으로 일괄 처리됨으로써, 사실상 동 사업에 대한 정확한 집행내역과 정산내역을 파악하기 불가능한 구조라 할 것임.

○ 따라서, 향후 이러한 불명확한 예산구조 개선을 통해 동 사업에 대한 명확한 예산집행 뿐만 아니라 정산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2-16. '지방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대한 2015년도 자치구별 반납고지 내역(안)>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합 계	156,130	146,571	9,559
종로구	1,657	1,646	11
중구	1,704	1,461	243
용산구	2,081	1,877	204
성동구	3,088	3,017	71
광진구	5,772	5,715	57
동대문구	5,870	5,573	297
종량구	8,532	8,492	40
성북구	8,541	7,868	673
강북구	7,020	6,995	25
도봉구	9,763	9,108	655
노원구	11,914	11,129	785
은평구	9,661	9,523	138
서대문구	3,408	3,325	83
마포구	5,010	4,585	425
양천구	8,094	7,005	1,089
강서구	8,971	8,586	385
구로구	8,943	8,618	325
금천구	5,325	5,222	103
영등포구	4,659	4,071	588
동작구	4,447	4,112	335

관악구	8,020	7,278	742
서초구	3,485	3,206	279
강남구	4,574	4,183	391
송파구	8,772	7,896	876
강동구	6,819	6,080	739
*주) '15년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자치단체경상보조 예산 160,231백만원 중 보조교사 국고 보조사업 4,101백만원 제외한 예산임			

◆ '서울형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 및 운영 내실화 필요

-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사업 內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세세항목중 '서울형어린이집 지원'사업은 민간어린이집 가운데 일정자격 기준을 갖추고 서울형어린이집 인증을 거칠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에 상응하는 인건비(시설장 및 영아반교사 80%, 유아반교사 30%, 취사부 100%등)와 운영비(시설당 총 보육료 수입의 10% 지원)를 지원하는 것으로, 시비 70%, 구비 30% 지원 사업임.
- 2015년 12월 현재 서울시 관내 어린이집 가운데 서울형어린이집 인증율은 22.2%이며, 2015년 이들 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예산 현액은 801억원이고, 2016년 예산안은 2015년보다 5억 3,235만원이 감액된 796억 1,592만원이 편성됨.
- 서울형어린이집이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에서 차지하는 비중(22%)이나, 이들에게 지원되는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볼 때, 현실적으로 시책 사업의 주요부문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서울시 관련 조례에는 이러한 서울형어린이집 인증 및 지원,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이 부재한 상황임.
- 따라서, 서울시 보육정책에서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이 차지하는 중요도를 감안하여, 조례상의 명문화를 통해 보다 책임 있는 행정

집행 뿐만 아니라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자에게는 서울형인증에 대한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필요가 있다고 봄.

○ 한편, 서울형어린이집의 운영과 관련하여, 2015년 지도점검결과 지도점검수 대비 법규위반율은 6.5%로 나타났고, 행정처분율도 5.8%에 이르고 있음(표 2-17 참조).

- 그리고, 서울형어린이집은 한해 평균 191개소(2013~2015까지 최근 3년간 평균, 국공립철회 건수 제외)가량이 공인 취소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서울형어린이집 재평가와 어린이집 매매 등으로 인한 취소 사유가 크게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당초 서울형어린이집 인증 제도를 다급하게 도입하면서 서울형으로 대거 유입되었으나, 재평가 과정에서 적정기준 미달로 인해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임.

○ 따라서, 향후 서울형어린이집의 도입의 목적대로 보육의 공공성의 확대 및 보육 질 향상·유지를 위해서는 서울형 재평가 제도 등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어야 할 것임.

<표2-17. 2015년 서울형어린이집 법규위반 및 행정처분유형별 건수 및 비율> (단위: 건, %)

연 도	어린이집 (개소)	지도점검수 (개소)	법규위반 유형별(건)					지도점검수 대비 법규위반비율
			계	운영일반	재무회계	아동교직원	안전위생	
2015년	1,552	1,289	82	37	20	7	18	6.36%
			행정처분 유형별 (건)					지도점검수 대비 행정처분 비율
			계	시정명령	운영정지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건/천원)	
			95	82	2	2	9/90,094	5.82%

6) '한부모가족자녀교통비 등 지원' 사업

◆ 사업 및 결산 개요

- 동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 대한 교통비, 교육비 지원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순수 100% 시비 사업임.
- 구체적 내용은, 한부모와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최저생계비 130% 이하 한부모 가정에 대하여, 중·고등학생 자녀 대상으로 분기별 8만6천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고등학생 자녀대상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 50%를 지원(50%는 교육청 지원)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의 2015회계연도 예산액은 165억 7,024만원이고, 예산성립 후, 7억2,599만과, 2,816만원을 각각 감액 전용(1건) 및 감액 변경사용(1건)하여, 예산현액은 158억 1,608만원이며, 이 가운데 144억 1,036만원이 집행하고, 나머지 14억 571만원은 불용 처리하여, 불용율은 8.9%임.

<표 2-18.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원' 사업, 2015회계연도 결산조사>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	변경사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율 (%)
일반보상금	16,570,248	△725,999	△28,160	15,816,083	14,410,369	1,405,713	8.9
사회보장적수혜금	16,570,248	△725,999	△28,160	15,816,083	14,410,369	1,405,713	8.9

◆ 불용액 및 불용율 저감 대책 필요

- 동 사업의 불용액은 14억 571만원으로 그 규모가 적지 않은 수준이며, 불용율(8.8%) 또한 타사업들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예산 변경 횟수 과다의 문제

- 한편, 동 사업은 2015회계연도 동안 총 4번에 걸쳐 예산변경이 이루어졌는데, 이 가운데 3회는 예산전용을 통해 타사업으로 감액(총액 7억 2,599만원)하고, 1회는 변경사용을 통해 감액(총액 2,816만원)하여, 총 7억 5,416만원을 감액하였음.
- 예산은 1년 전에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므로, 집행과정에서 일부 사업변경은 불가피할 수 있고, 이에 예산 집행상의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해 전용 등의 제도가 활용 될 것이나, 이는 극히 불가피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향후 동 사업과 같이 특정 사업에서 여러 번의 예산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것은 그만큼 예산 설계의 미흡함에서 연유되는 측면이 크다는 점을 유념하고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표 2-19. 2015회계연도 예산변경 현황>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예산 전용			예산 변경사용			예산변경 사유
		감액	증액	날짜	감액	증액	날짜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원	사회보장적수 혜금	3,480	0	09-03				2015.한부모가족복지 시설 평가위임 수 당 지급(가족담당관 -15122호, 15.8.28)
한부모가족복지 시설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0	3,480	09-03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원	사회보장적수 혜금	22,519	0	10-28				여성가족부 건강가 정지원센터 운영지 원사업 국고보조금 확정내시('15.1.7.)에 따라 시비보조금 매 칭액 증액 요청
자치구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 지원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0	22,519	10-28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원	사회보장적수 혜금				28,166		10-28	여성가족부 위기가 족지원 국고보조금 확정 변경 내시('1 5.3.18)에 따라 시 비매칭보조금 증액
가족역량강화지 원	자치단체경상 보조금					28,166	10-28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원	사회보장적수 혜금	700,000		12-02				구로구 가족통합지 원센터 건립 국고보 조금 확보를 위한 전용
가족통합지원센 터 건립	자치단체자본 보조		700,000	12-02				
합계		725,999			28,166			754,165

◆ **작은 감액 예산변경하고도 불용액 과다한 문제 개선 필요**

○ 위의 <표 2-18>에서 볼 수 있듯이, ‘한부모가족자녀교통비 등 지원’사업은 당초예산 165억 7,024만원 가운데 7억5,416만원을 타예산사업으로 감액 전용해 주고도 (예산현액 158억 1,608만원) 불용액이 14억 571만원이 남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결국, 당초예산 대비 21억 5,987만원(당초예산대비율 13%)을 예산변경 또는 불용한 것이나 다름 없는바, 당초 예산 추계상 과다한 측면이 컸다 할 것임.

- 동 사업의 경우, 그 특성상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그 자녀들에 대하여 교통비와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사업 대상자에 대한 주민등록정보 등과 같은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 불용액과 불용비율을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당초 예산 추계상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보다 과학적이고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도록 그 노력이 요구됨.

◆ **연례적으로 타사업의 예산확보까지 염두한 예산편성 사례 개선 필요**

- 더욱이, 동 사업은 최근 4년간의 예산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2012년과 2013년에 이어 2015년에도 연례적으로 7억원 가량을 타 사업에 감액 전용(변경 포함)해준 것으로 나타났고, 그리고도 연평균 6억 5,438만원(4년 평균)의 불용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남.

<표 2-20.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원 사업 최근 4년간 결산조사' > (단위: 천원)

연도	예산액	예비비 사용	전용	변경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율 (%)
2012	7,528,551		△705,901		6,822,650	6,623,849	198,801	2.9%
2013	17,883,528			△709,000	17,174,528	16,436,215	738,313	4.3%
2014	16,483,968				16,483,968	16,209,258	274,710	1.7%
2015	16,570,248		△725,999	△28,166	15,816,083	14,410,370	1,405,713	8.9%
2016	15,063,654	-	-	-	-	-	-	-

- 이런 점에서 동 사업은 매년 과다한 예산편성을 해 두었다가,

다른 예산의 부족분을 메꿔주는 저축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이는 앞서 ‘어린이집지원(자체)’사업에서 지적했던 문제제기와 마찬가지로, 시비 100% 사업이 갖는 특수성을 활용하여, 과도한 예산 편성을 해놓고 이후 집행과정에서 타 사업의 부족분을 채워주는 형태로의 예산운영 방식이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됨.

- 이의 문제와 관련하여, 그동안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지적해 왔음.
- 이에 다행히 2016회계연도의 예산편성시에는 전년대비 15억 659만원을 삭감(9% 삭감)하여 편성한 점은 매우 바람직한 조치로 보이나,
- 이는 2015년 당초예산액에 대비 삭감된 금액으로, 실제 2015년 결산결과 예산현액(158억 1,608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도 14억 571만원이 미집행된 사례를 고려하여, 향후 2017년에는 보다 면밀한 예산 계획과 집행상 각별한 유의가 요구됨.

7) '아동복지센터 운영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 사업

◆ 사업 및 결산 개요

- 동 사업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보호를 위한 상담 및 적절한 조치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에서 직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상담소에 운영하는 사업임.
- 2015계연도 당초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5억 8,367만원이고, 이 가운데 4억 8,833만원을 집행하여, 9,53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이에 따른 불용율은 16.3%로 기록됨.

<표2-21. 아동복지센터운영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2015회계연도 결산 조사>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	변경 사용	예산 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 율(%)
아동복지센터운영 및 아동보호전문기관확대	583,667				583,667	488,328	95,339	16.3

◆ 연례적으로 불용율 과다 문제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 미흡

- 아동복지센터운영에 대한, 최근 3년간의 불용율을 살펴보면, 2013년 22.9%, 2014년 21.1%, 이어 2015년 16.3%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2014회계연도에는 그 전년도의 사고이월 되었던 예산

(3억7,677만원)을 제외할 경우, 실제 사업비에 대한 불용율은 32.9%에 달하고 있음.

<표 2-22 '아동복지센터운영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사업 최근 4년간 예산·결산 현황> (단위: 천원)

연도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율 (%)	불용사유
2013	1,188,058	539,527	271,758	22.9	하반기 추경편성으로 절대공사시간 부족에 따른 사고이월발생 및 소방공사 낙찰에 따른 집행잔액
2014	1,050,306	828,491	221,815	21.1	세월호 사고 여파로 아름다운 입양가족 초청행사 등 행사성 경비와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등 사업 축소 및 취소 시행
2015	583.667	488,328	95,339	16.3	메르스 전염병 여파로 행사축소(18백만원), 아동 치료 등 의료 및 구료비 실집행잔액(12백만원), 소규모 시설보수공사 등 집행잔액(26백만원), 기타 조직운영사무 관리비 등 집행잔액(39백만원)
2016	602,555	-	-	-	

○ 2013년에 이어 2014회계연도 결산심사 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아동복지센터의 과도한 불용율 발생 문제, 전례답습적인 예산 과다추계 문제 등에 대하여, 많은 지적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회계연도 결산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됨.

◆ 전년도 결산 실태 무시한 전례답습적 예산편성 문제 2016년에도 여전

○ 더욱이, 서울시에서는 아동복지센터의 최근 3년간의 결산결과가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2016년 예산은 전년대비 3% 순증의 예산(총 6억 256만원, 표 2-22 참조)으로 편성·집행하고

있는바, 지난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결과를 면밀히 점검하지 않고 전례답습적인 예산운용사례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임.

◆ 과다편성 후 불용율 낮추기 위한 신규사업 추진

- 구체적으로는, 세부항목 가운데 대표적인 과다편성의 사례로, ‘사무관리비’의 예를 들어보면, 2015회계연도에 예산액은 1억 2,209만원이며, 이 가운데 2,000만원은 당초 예산과목에도 없던 연구용역비로 감액 변경사용하고 남은 예산현액은, 1억 209만원이며, 이 가운데 7,671만원을 집행하고, 2,537만원을 불용하여 불용율은 24.8%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만약에,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을 감액변경하지 않았더라면, 사무관리비는 44.4%의 불용율을 기록될 것이었으나, 과도한 불용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긴급하게 새로운 예산비목을 편성하여 추진한 측면이 있다 할 것임.
- 유사한 사례로, ‘공공운영비’의 경우에도 최근 3년간의 불용율이 연례적으로 높았던 비목으로, 2013년 28%, 2014년 87%에 이어 2015년도 25.5%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고, 2015년의 경우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비목으로 감액 조정하지 않았더라면 58.7%의 불용율을 기록하는 것임.

<표2-23. '아동복지센터운영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사업 최근 3년간 세부항목별 결산 현황> (단위: 천원)

통계목	2013회계연도 결산				2014회계연도 결산				2015회계연도 결산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율(%)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율(%)	예산액	전용	변경사용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율(%)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0,000	48,750	11,250	19	71,712	171,026	15,686	8.40	146,362	22,860		169,222	168,278	944	0.56
사무관리비	93,561	90,768	2,793	3	121,700	104,452	18,248	14.87	122,090		-20,000	102,090	76,718	25,372	24.85
공공운영비	220,837	159,367	61,470	28	215,729	12,938	86,791	87.03	51,221	-22,860		28,361	21,116	7,245	25.55
행사운영비	21,300	18,672	2,628	12	75,900	38,456	37,444	49.33	75,900			75,900	58,285	17,615	23.2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780	3,332	448	12	3,400	2,019	1,381	40.62	3,400			3,400	3,225	174	5.12
특정업무경비	21,600	21,588	12	0	22,800	21,617	1,183	5.19	22,800			22,800	21,037	1,763	7.73
재료비	1,000	989	11	1	1,000	1,000		0.00	1,000			1,000	1,000		
연구용역비									-		20,000	20,000	18,142	1,857	9.29
사회보장적수혜금	9,000	8,912	88	1	9,000	7,576	1,424	15.82	9,000			9,000	8,999	1	0.01
행사실비보상금	3,080	3,080	0	0	4,254	4,173	81	1.90	4,254			4,254	4,251	2	0.05
의료및구료비	22,500	17,042	5,458	24	36,200	25,440	10,760	29.73	36,200			36,200	24,274	11,926	32.94
시설비	695,000	155,705	175,822	25	100,000	414,882	48,590	10.48	100,000			100,000	74,461	25,539	25.54
감리비	25,000	0	11,700	47		13,300		0.00	-						
자산및물품	11,400	11,322	78	1	11,840	11,613	227	1.92	11,440			11,440	8,538	2,902	25.37

◆ 당초 미편성된 예산의 신설로 인한 의회의 예산 심의권 훼손 문제

○ ‘사무관리비’ 감액하여 집행한 ‘연구용역비’는 당초 예산 편성 항목에도 없던 새로운 항목을 신설하여 집행한 것임.

- 서울시는 상기 연구용역비로의 변경사용에 대한 사유에 대하여, ‘서울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실태조사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

- 동 사업비 집행사유의 시급성이라는 측면에서 고려해보면, 2015년 전반기 당시 언론보도를 통해 심각한 아동학대사건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서울시에서는 이의 해소방안의 하나로 진행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으나, 그럼에도 연구이행전 사전에 이행해야하는 예산심의 절차 및 학술용역 추진 절차를 미이행한 사례라는 점에서 문제가 됨.
- 우선, 사전에 예산심의 당시 없던 새로운 비목의 신설을 통한 집행하였는데, 동 연구용역은 신규사업 항목인 만큼 계획성 있는 준비와 이에 따른 예산심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편성되지 아니한 예산을 집행과정에서 자의적으로 신설하여 집행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향후 이러한 사례는 반드시 개선 될 필요가 있음.
- 연구용역의 주제와 관련해서도 동 주제는 '12년 11월부터 아동학대 현장조사와 사후관리 기능을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아동학대예방센터(공공)와 동남권아동학대예방센터(민간)의 역할 재조명에 관한 주제는 그동안 꾸준히 논의되어 왔던 것으로, 그런 점에서 오히려 사전의 철저한 준비과정과 예산심사절차를 거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했다 할 것임.

- 더욱이, 서울시의 학술연구용역의 관리를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조직담당관)의 ‘학술용역 추진지침’에 따르면, 학술용역 추진시 학술용역심의 절차를 이행한 후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여, 학술용역에 대한 사전 계획이 철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의 절차가 사전에 이행되지 않고, 예산을 전용받기 위하여 사후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전준비가 미흡한 사례로 보여짐.

8) '메르스관련 긴급대응체계구축(여성시설)' 사업
: 의안번호 1181호,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사업 및 결산 개요

- 동 사업은 예비비 지출 사업으로, 2015년 6월 전국적으로 메르스(MERS- CoV) 전염병이 확산되면서, 서울시에서는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한 대응책으로 총 9개 부서의 11개 사업에 62억 3,400만원의 예비비를 지출 결정하였는데, 동 사업에서의 예비비의 지출도 이러한 조치의 하나라 할 수 있음.
- 구체적 사업내용은,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하여 여성인력개발기관 및 어린이집,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다중이용시설에 감염예방 물품(마스크, 세정제) 구입비를 지원한 것임.
- 이를 위한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0억 4,399만원이고, 이 가운데 7억 3,419만원을 집행하고, 3억 980만원이 불용되어, 불용율은 29.7%로 나타남.

<표 2-24. '메르스관련 긴급대응체계구축(여성시설)' 사업, 2015회계연도 결산조사> (단위: 천원)

예산과목	지출결정일자	지출일자	지출결정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율 (%)
계	2015-06-07	2015-07-22	1,043,993	734,186	309,807	29.68
사무관리비	2015-06-07	2015-07-22	1,043,993	734,186	309,807	29.68

◆ 예비비 지출 요건의 부합성 및 편성의 필요성 검토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및 같은법 시행령 제 48조(예비비 사용의 제한)에 따라³⁾ 불가피하게 집행할 수 밖에 없는 사업에 국한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한 예비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2015년 5월에 발생한 메르스는, 5월 20일 첫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후 순식간에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확진환자 186명, 사망자 38명에 이르는 국가적 차원의 대형 전염병 사태로 기록되고 있음.

- 이에 '15년 6월 당시, 서울시는 거세게 확산되는 메르스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메르스 방역 대책본부'를 가동시켰고, 동 사업과 같이 메르스 관련 긴급대응체계구축을 위한 예비비를 지출(지출결정일 6월 7일, 지출일자 7월 22일)하였으며, 2015년 7월 16 일자로 메르스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한 '2015년도 제1회추경

3)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예비비 사용의 제한) 업무추진비·보조금(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의 계상을 할 수 없다.

예산안을 편성·제출한바 있음.

- 당시의 메르스 사태는 예측할 수 없었던 국가적 위기 사태로,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한 동 사업의 예비비 지출 사유는 그 시 급성과 불가피성이 인정됨.
- 2015년 당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다중복지시설 등에 지원된 메르스 예방 물품은 여성시설과 보육시설 등 총 7,603 대상 시설에 7억 3,400만원의 물품이 지원되었고, 3억 980만원 (불용율은 29.7%)이 불용됨.
- 불용 사유는 “시설별 긴급대응을 위한 자체물품 구입 및 메르스 조기종식 등으로 인한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임.

<표 2-25. '분야별 소관시설에 감염예방 물품(마스크, 세정제)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계	여성분야	보육분야	가족분야	외국인다문화분야
물품 지원	734	11	690	28	5

9)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 사업 및 결산 개요

- '동 사업은 보육수요 해소 및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민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 서울시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전체어린이집의 30%를 차지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하여 2018년까지 1,000개소를 추가 확충하겠다는 연차적 계획을 갖고, 2015년에는 150개소 확충을 목표로 함.
- 이를 위한 2015회계연도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950억 324만원이고, 집행액은 950억 106만원으로, 불용액은 219만원이 남아 불용율은 0% 임.

<표 2-26.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 2015회계연도 결산조서>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	변경 사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율 (%)
계	95,003,246			95,003,246	95,001,056	2,190	0.00
사무관리비	100,000			100,000	99,380	620	0.62
연구용역비	50,000			50,000	48,430	1,570	3.14
자치단체경 상보조금	0	9,600,000		9,600,000	9,600,000	0	0.00
자치단체자 본보조	94,853,246	△9,600,000		85,253,246	85,253,246	0	0.00

◆ 국공립확충사업 현황 및 실적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서울시가 ‘12년부터 주요시책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4년간 총 3,412억원을 집행(‘12년부터 ‘15년까지 매년 각각 889억원, 775억원, 798억원, 950억원)하고, 이의 결과로 동 기간동안 국공립어린이집 총 459개소를 확충함.

<표 2-27.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및 확충 실적> (단위: 억원, 개)

연도	예산 집행액	확충 개소수 합계	민관 연대	공공 기관	공동 주택	건물매입		민간 매입	민간·가정 전환
						신축	리모델링		
2012	889억원	107	35	19	24	14	9	4	
2013	775억원	102	36	10	27	7	17	5	
2014	798억원	87	18	4	39	6	17	3	
2015	932억원	163	5	6	10	12	8	22	100 (가정84)
합계	3,394억원	459	94	39	100	39	51	34	100

- 이상과 같이, 서울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자체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현재 전국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5%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국공립 설립 비율을 14%까지 향상시켰고, ‘12년말 기준 총 690개소였던 국공립어린이집은 ‘15년 12월 현재 922개소로 확대시킨바, 이는 보육공공성 및 보육품질 개선을 유도 하는데 기여하고, 중앙정부 정책을 선도하는 역할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됨.

<표 2-28. 서울시 관내 어린이집 현황> (단위: 개소수, %, 2015. 12월 현재)

구 분	계	국공립	사회 복지 법인	법인 단체	민 간	가 정	부 모 합 동	직장
시설수	6,598	922	35	141	2,174	3,105	27	194
비율	100%	14.0%	0.5%	2.1%	33.0%	47.0%	0.4%	3%

◆ 당초 미편성하였다가 새로운 비목으로의 전용·집행한 96억원, 의회 심의권 훼손 및 예산계획 미흡 사례

- 동 사업의 2015회계연도 예산집행상의 특이점은, 당초 ‘지방자치단체자본보조’로 편성하였던 통계목을, 예산집행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라는 새로운 통계목을 신설하여, 당초예산인 96억원을 전용하여 집행함. 이의 조치와 관련하여 몇 가지 주요한 쟁점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우선, 이처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대로 집행하지 아니하고, 예산집행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새로운 비목을 신설하여 집행하는 것은, 의회에서의 심의·의결한 사항을 결과적으로 훼손시킨 사례라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한 사례라 할 것임.
- 더욱이, 전용의 예산 규모가 96억원이라는 대규모의 예산일 뿐만 아니라, 동 사업은 서울시의 핵심 사업의 하나라는 점에서 그 예산의 계획 및 집행방법이 보다 면밀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구체적인 예산 계획 및 변경에 대한 설계 자체부터 미흡했던 대표적 사례라 할 것임.

◆ '서울형의 국공립으로 전환'에 치중이 국공립확충사업의 적절성 문제

- 다음으로, 서울시는 동 사업의 전용 사유에 대하여, “당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비 편성시 시설비 및 기자재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확충 계획 방침 보완시('15.2.23) 서울형 어린이집의 전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일부를 지원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동 사업비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 예산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을 변경한 한 것으로 보고 함.
- 이상의 서울시의 전용사유대로라면, 사실상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새로운 신규 확충이나 민관협력 차원 확충 보다는 '기존의 서울형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데 보다 치중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는 사실상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방식에 대한 내용이 기존 방식과는 크게 변화된 것이라 할 것임.
- 그런데, 서울형에서 국공립으로 전환될 경우, 사실상 최초 운영권은 기존의 서울형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운영자에게 그 운영권이 부여 되는바, 위탁체 선정 등의 절차는 형식적 절차에 그칠 가능성이 크고, 오히려 기존의 서울형어린이집 운영과의 차별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서울시가 대대적으로 내세우는 국공립 확충의 의미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 더욱이,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에서의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의 운영에 대한 명확한 평가가 선행되지 않은 채로, 서울시가 전면으로 내세우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시책’이 2015년부터는 ‘서울형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시책’으로 그 실질적 내용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 사업 간의 상이점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새로운 비목으로 전용한 ‘지방자치단체경상보조금’ 목의 적절성 문제

- 다음으로, 전환한 예산항목의 적절성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서 발행한 『2016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자본보조’와 ‘지방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2-29>와 같음.
- 즉, 이들 통계목간 큰 차이점은, 지방자치단체이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전달되는 민간에 대한 교부금이든지 간에 그것이 ‘자본적 경비’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가 그 판단 기준이 된다 할 것임.

<표 2-29. '지방자치단체자본보조'와 '지방자치단체경상보조금' 차이점>

그룹	편성목	설정 (통계목 포함)	비고
	403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01. 자치단체자본보조 1. 지방자치단체에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조금	당초 통계목
	308 자치단체등 이전	01.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 시·도에서 관할 시·군·자치구에 지급하는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2. 시·도에서 관할 시·군·자치구를 통하여 민간에 교부하는 교부금 중 자본 보조금 이외의 경상적 보조금	전용한 통계목

- 동 사업에서의 전용사유는 서울형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 시 임대보증금(전세가액의 약 40%) 지원을 위한 명목으로 96억 원을 당초 통계목인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전용한 것임.
- 그러나, 여기서 '임대보증금'이 경상적 경비에 속하는 것인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또한 서울시는 민간(서울형)에서 전환한 시설이, 향후 국공립을 반납하게 되면 '임대보증금'도 서울시에서 반납 받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상기와 같이 경상적 경비 지출을 위해 지원된 보조금이 과연 훗날에 돌려받을 수 있는 성격의 통계목인지에 대하여는 그 해석이 분명치 않음.
- 따라서, 이상의 이유로 당초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전용한 예산 사례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검토가 요구됨.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 및 운영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필요**

○ 서울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대대적인 확충을 위해 '12년부터 올해 '16예산까지 5개년 동안 총 5,066억원을 집행하고 있고, 2018년까지의 예산계획에 따르면 8,531억원('12~'18)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런 점에서, 2016년은 동 사업이 본격화 된지 횃수로 5년 째가 되는 해인만큼 시기적으로 그동안의 사업 추진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해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짐.

○ 특히, 그동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갖는 긍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하여 여전히 자치구간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그 운영상의 문제점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는 등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이 갖는 당초의 목적인 '보육수요 해소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더욱 보완되어야 할 사항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는 점에서,

- 이를 위해서는 중간평가를 통한 심층적 분석을 토대로 향후에도 이어질 중장기적 운영방향에 풍부하고 경험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 필요

- 한편, 현재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된 자치 조례는 현행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에 의거하지만, 동 조례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서울시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의 대대적인 확충을 위한 심의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이 부재한 상황인바,
 - 앞서 제시한 자치구간 격차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한 각종의 조직 및 효율적 지도·점검의 방안 등 향후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제도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10)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사업

◆ 사업 및 결산 개요

-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사업은 여성취업 확대를 위한 특화된 직업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취업·창업 등 여성의 취업·창업 촉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시 관내 17개소의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순수 시비 지원 사업임.
- 동 사업의 2015회계연도 당초예산액은 50억 880만원이고, 이후 예산집행과정에서 1,198만원을 감액 조정한 예산현액은 49억 9,681만원이고, 지출액은 48억 4,467만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은 3.04%(불용액 1억 5,214만원)로 기록됨.

<표 2-30.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사업 , 2015회계연도 결산조서>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	변경사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율 (%)
계	5,008,800	△11,981		4,996,819	4,844,671	152,148	3.04
사무관리비	19,000	△11,981		7,019	2,879	4,140	58.98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500			3,500	3,493	7	0.20
민간경상사업보조	3,986,300			3,986,300	3,838,298	148,002	3.71
민간자본사업보조	1,000,000			1,000,000	1,000,000	0	0.00

◆ '사무관리비', 예산의 63%를 감액 전용하고도, 예산현액대비 불용액 60%에 이르는 기록

- 동 사업의 세부 통계목인 '사무관리비'는 일자리프로젝트 심사 비용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관계자 회의 추진비, 추진정책 관련 종사자 교육비, 정책자문가 자문회의비 지원을 위해 편성된 것임.
- 2015회계연도 동 '사무관리비'로 당초 편성된 1,900만원은, 예산 집행 과정에서 '예산절감분을 활용하여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사업비의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시비부족분 확보'를 위해 1,198만원을 감액 전용해 주었고, 그리고 남은 예산현액 701만원 가운데 287만원을 집행하고, 414만원을 불용하여, 59%의 불용율을 기록하고 있음.
- 이는 결과적으로 볼 때, 당초 '사무관리비'로 필요한 예산은 1,90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에도 못 미치는 287만원으로도 충분했다는 것이거나, 이것이 아니라면 애초 설계되었던 상기의 각종 회의비 및 교육비 지원을 위한 사업추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 할 것임.
- 이와 관련하여, 동 '사무관리비'의 최근 3년간의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2,100만원이 편성되었다가, 2015년에는 1,900만원이, 올해 2016년에는 1,200만원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점을 감안하여 본다면, 사실상 예산의 절감 차원

으로 매년 감액조정을 하고 있다기 보다는 해당 사업의 시급성 또는 타당성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증거로 보여짐.

<표 2-31.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세부사업별, 최근 3년간 결산 및 예산조사> (단위: 천원)

구 분	2014년 예산액	2015예산액 (A)	2016예산(안) (B)
계	5,190,800	5,008,800	5,219,800
사무관리비	21,000	19,000	12,0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500	3,500	3,500
민간경상사업보조	340,000	3,986,300	4,504,30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3,626,300		
민간자본사업보조	1,200,000	1,000,000	360,000

- 비록, 사무관리비에 편성된 예산의 규모가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의 규모에 견주어 볼 때도, 또 동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볼 때도, 매우 작은 세부 예산이라 하겠지만, 이처럼 방만한 예산운용방식은 대단히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되는바, 해당 세부사업들에 대한 면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불요불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과감히 종료할 필요가 있음.

◆ 예산과 편성-감액전용-불용고지에 이르는 부적절한 예산운용 반복 사례

- 더욱이,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사업은 2013회계연도에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보증금 지원을 위해 편성된 '민간자본보조' 항목에서 과도한 예산 편성하여, 연말에 집중적으로 타사업으로의 감액 전용을 해주고도 높은 불용사례를 기록했던 전과를 갖고 있는 사업인바, 동 사업의 효율적 예산운용이 요구됨.

<표 2-32.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사업, 최근 3년간 결산조사> (단위: 천원)

연도	예산액	전년이월	전용	변경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율 (%)
2013	5,523,780		△283,085		5,240,695	4,734,911	505,784	9.65
2014	5,190,800		△150,000		5,040,800	5,026,855	13,945	0.28
2015	5,008,800		△11,981		4,996,819	4,844,671	152,148	3.04
2016	5,219,800		-	-	-	-	-	-

◆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사업평가 철저 및 운영비 산정 타당성 확보 필요**

-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사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부사업은, 관내 17개소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비와 기능보강비 및 각종 사업비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비로, 2014년 39억 6,630만원, 2015년 39억 8,630만원, 2016년 45억 430만원임. 이 사업비는 최근 3년간 연평균 10.4%의 증가율('14년 17.6%, '15년 0.5%, '16년 13%)을 보이고 있는 상황임 (상기 표 2-32 참조).
- 동 사업의 목적은 여성의 취업과 창업을 촉진하려는 것인바, 이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민간이 운영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 (17개소)에 민간이전 형태로 동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인 만큼, 상기 목적이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검증 작업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것임.
- 그러나, 그동안 매년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에서 시행되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평가는 각 시설에 대한 다차원적인 평가라기

보다는 매우 형식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져온 측면이 있고, 결과적으로 평가를 통한 시설운영의 개선과 운영비 지원을 위한 근거로의 활용과 같은 예산운용의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들 시설에 대한 운영비는 연평균 10.4%씩 증가하고 있는바, 시설 운영 및 성과에 대한 엄밀한 평가를 기반으로, 실제 이들 시설에 대한 운영비의 증가와 관련된 타당한 증거와 근거를 갖고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 이와 관련하여, 현행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 29조(실적보고) 및 제30조(정산검사)에 따르면⁴⁾, 지방보조사업자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제출하고, 시장은 이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정산검사 및 보고금액을 확정하여야 하는바, 이의 이행을 철저히 하여, 실제 운영실적 및 정산결과와 예산 지원금간 효율적 선순환 구조로의 변화가 요구됨.

4)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9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들어간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30조(정산검사)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로 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제29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3. 기금운용에 대한 검토의견

가. 기금운용 결산 총괄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기금은 ‘여성발전기금’이 운영 중이며, 2015회계연도 말 현재 조성액 총액은 241억 497만원으로, 이는 전년도말 현재액(242억 2,839만원)에서 2014회계연도에 5억 1,555만원이 추가로 조성되어, 이 가운데 6억 3,892만원이 사용되고 남은 것임.

<표 3-1. 2015회계연도 여성발전기금 조성 총괄표> (단위: 천원)

기금명	전년도말 현재액 (①)	2015년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⑤=①+②)
		계 (②=③-④)	조성액 (③)	사용액 (④)	
계	24,228,387	△123,401	515,523	638,924	24,104,986
여성발전기금	24,228,387	△123,401	515,523	638,924	24,104,986

- 2015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구체적 운영내역을 살펴보면, 수입의 주요 원천은 ‘이자수입(61.1%)’과 ‘예치금회수(38.9%)’로 구성되고, 지출은 주로 ‘고유목적사업비(70.9%)’ 과 ‘예치금(24.3%)’ 에 지출한 것으로 나타남.

<표 3-2. 2015회계연도 여성발전기금 운용내역> (단위: 천원)

수 입			지 출		
구 분	금 액	비 율	구 분	금 액	비 율
계	843,910	100%	계	843,910	100%
전입금			고유목적사업비	598,287	70.9%
용자회수		-	기본경비	40,637	4.8%
예탁금상환금		-	예치금	204,986	24.3%
예치금회수	328,387	38.9%	예탁금	-	-
이자수입	515,523	61.1%			
기타수입					

나. 기금 운용에 대한 검토의견

1) 기금 운용의 적합성 문제

- 기금은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할 경우, 또는 신속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산과 별도로 조성된 자금을 보유·운용하는 제도로써 그 필요성은 인정됨.
- 하지만, 기금의 규모와 수가 확대되면 재정체계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고, 재정의 투명성도 확신할 수 없는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뿐만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보다는 정

치적 우선순위 등이 개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운용중인 기금에 대하여 그 존속의 필요성을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음.

-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추진을 위한 목적으로, 1996년에 설치되었음. 2015년 한 해 동안 동 기금은 상기 목적달성을 위하여 서울시 소재 여성단체, 비영리 법인 등에게 공모사업을 실시하여 총 45개 단체(사업)에 총 6억 1,099만원을 지원함.
- 이런 점에서 동 기금이 갖는 상징성은 일정정도 인정된다 하더라도, 동 기금에서 추구하는 설립목적은 일반회계 운용의 취지와도 부합하며, 기금사업에서 이루어지는 공모사업 또한 일반회계를 통해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재정 운용의 투명성 등을 위하여 장기적으로는 동 기금 운용 존속 여부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예치금 과다의 문제 개선 필요

- 기금 운용에 있어 고유목적사업의 비율이 높을수록 기금운용이 건전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기금이 고유목적 사업에 시의적절하게 사용되지 않거나 미진하게 사

용되면서, 관련 기금을 은행금고와 재정투융자 기금에 과도하게 예치·예탁하는 것은 효율적 예산운용에 있어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임.

- 최근 5개년 동안의 여성발전기금 운용현황을 살펴보면, 2015 회계연도까지는 고유사업비의 집행비율이 점차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2015회계연도에 그 비율이 다소 낮아지고 있고, 여전히 예치·예탁금의 최근 5개년 평균 비율이 전체 기금지출액의 33%를 상회하고 있는바, 향후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춰 고유목적 사업이 보다 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표 3-3. 최근 3년간 여성발전기금 운용내역 내역> (단위: 천원)

기금	지출액						
	계	고유목적사업비		기본경비		예치금/예탁금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2011	1,982,236	905,579	45.60%	7,674	0.40%	1,068,983	54%
2012	3,035,959	1,880,987	62%	70,142	2.30%	1,084,830	35.70%
2013	1,221,213	803,796	65.80%	45,966	3.80%	371,451	30.40%
2014	1,506,684	1,136,807	75.40%	41,490	2.80%	328,387	21.80%
2015	843,910	598,287	70.90%	40,637	4.80%	204,986	24.30%
평균	1,718,000	1,065,091	63.9%	41,182	2.8%	611,727	33.2%